

2022년도 우수신진연구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 신청 안내

□ 사업목적

-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가 임용 초기 연구실험실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비를 추가 지원

□ 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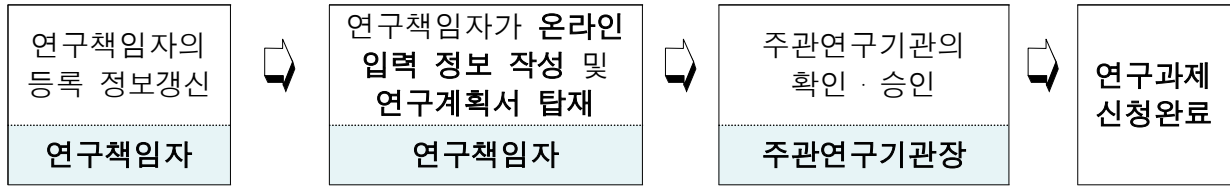
- 2022년도 우수신진연구 신규과제 선정자 중 대학교원(전임)*인 연구책임자 (기초·응용의학 분야 제외)
 - ※ 분야별 지원체계 적용 계획에 따라 기초·응용의학 분야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※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, 기존에 최초혁신실험실(舊 연구환경구축비 포함) 수혜를 받은 연구자는 금번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 신청 불가
 - ※ 2022년도 우수신진연구 최초혁신실험실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대학에서 국(공)립·정부출연·민간 연구소로 이직한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
 - * 신청자격은 대학교원(전임)에 한하며, 주관연구기관이 대학병원인 연구책임자는 본교대학교원(전임)임을 반드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함.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- 과제당 지원규모: 0.5~1억 원(간접비 없음)
 - 연구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맞게 우수신진연구 과제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연구장비에 한하여 신청
 - ※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집행가능한 기기(컴퓨터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), 소프트웨어(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),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(냉난방기기, 공기정화기, 환풍기, 책상, 의자, 캐비닛 등) 등은 신청 불가
 - 단일품목 단가가 10,000천원 이상인 장비부터 신청 가능
 - ※ 10,000천원 미만의 연구장비 신청 시 해당 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자동 제외
 - 현재 수행 중인 우수신진연구 과제의 협약변경을 통해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비(연구시설·장비비)에 추가하여 지원
- 지원기간: 2022.7.1. ~ 2023.2.28.
 - ※ 우수신진연구 수행과제의 당해연도(2022년도) 연구종료일(2023.2.28.)까지 지원

□ 신청방법

-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<http://ernd.nrf.re.kr>)에 로그인 하여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(신청서) 등록·승인



- ※ 신청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정보(www.kri.go.kr)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업데이트하고 등록해야 하며, 신청 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(소속기관)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

□ 신청기간

구분	신청 및 검토/승인기간	비 고
연구책임자 신청	2022.4.29.(금) 09:00 ~ <u>2022.5.9.(월) 18:00:00</u>	연구책임자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제출기간
주관연구기관 승인	2022.4.29.(금) 09:00 ~ <u>2022.5.10.(화) 18:00:00</u>	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 담당자 승인 기간

- ※ 연구책임자는 상기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을 주관연구기관(소속기관)이 승인 시 최종 접수 완료
- ※ 접수마감 시간에 자동으로 접수 시스템이 종료되어 종료시간 이후 접수가 절대 불가능하며, 마감시간 직전에는 접수량 증가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~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

□ 제출서류

- 온라인 입력: 연구계획서 기본사항, 최초혁신실험실 장비구축 내역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입력

- ※ 자세한 입력항목은 신청 매뉴얼(추후 공지)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 입력

- 연구계획서 및 관련 파일 업로드

- (필수) 연구계획서* (최초혁신실험실 연구환경구축 및 활용계획)

- * 연구계획서 분량은 표지를 제외한 2쪽 이내

- (해당자만 제출) 3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시설장비 심의요청서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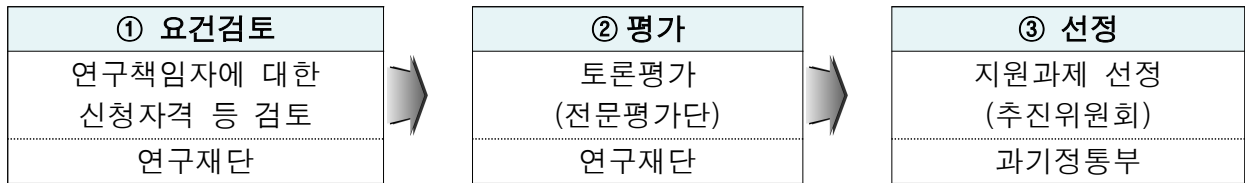
- * 단일품목으로 장비단가가 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축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작성

- (해당자만 제출) 대학교원(전임) 증빙자료*

- * 주관연구기관이 대학병원인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제출하며, 해당 연구책임자는 본교대학 재직증명서 등 대학교원(전임)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(미제출 시 요건탈락 등 불이익이 있음)

□ 평가절차 및 항목

○ 평가절차



○ 평가항목

사업명	평가항목 및 내용	구분
최초혁신실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환경 구축 또는 활용의 적절성 - 확보예정 연구장비시설과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도는 적절한가? - 연구자의 향후 연구환경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가? 	추천 /미추천

※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□ 안내사항

- 수행 중인 우수신진연구의 학문분야(CRB분야)와 동일하게 신청
 - ※ 평가학문(RB)분야 선택 시 해당 분야의 학문분야(CRB분야)가 우수신진연구의 학문분야(CRB분야)와 동일한지 확인((세부)평가학문(RB)분야는 변경 가능)
-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 연구비는 직접비 내 연구시설·장비비 항목으로 지원되며, 연구시설·장비비 외 여타 비목으로의 전용 및 변경 불가
-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수 상한제한(3책 5공) 대상이 아님.
-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.
-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,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
 - ※ 접수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(소속기관에 문의)
-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,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계획서 제출 요망

- 우수신진연구 수행자에게 연구환경구축 추가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취지상 선정결과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.
- 과제 선정 시 기존 과제(우수신진연구) 협약변경을 통해 최초혁신 실험실 연구비 추가 지급
 - ※ 상세 진행사항은 선정 이후에 안내 예정
- 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이직 시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시설·장비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 요망

[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]
제16조(협약의 변경) ③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변경 전·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추진일정

일 정	추진 내용
2022. 4.29. ~ 5.10.	■ 계획서 접수·승인(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은 5.9. 18:00:00)
2022. 5월 중 ~ 6월 중	■ 선정 평가
2022. 6월 말	■ 추가지원 선정 결과 안내
2022. 6월 말	■ 기존과제 협약변경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문의처

-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e-R&D) 관련 문의: 042-869-7744
- 사업 관련 문의: 042-869-6392, 6393, 6394, 6397
- 평가 관련 문의

구분	담당 학문단	전화번호(042-869-****)
평가 관련 문의	자연과학단	6558
	생명과학단	6534
	의약학단	6055
	공학단	6542
	ICT·융합연구단	6564